

윤활유 첨가제 수입 산 · 관 마찰

유공 · 호유 등 1년이상 유독물 수입신고 기피 ... 환경처 수입중지서 일단 후퇴

최근 환경처와 윤활유업체가 윤활유첨가제 수입을 둘러싸고 대립,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환경처가 3월15일부터 윤활유첨가제 30여종의 수입을 전면 중지, 윤활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2월 발효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윤활유 수입업체(사실상 윤활유 생산업체)가 「신고면제 화학물질 인정」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환경처가 유독물 수입품목 등록필증 또는 화학물질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승인치 않겠다고 통고한 때문이다.

특히, 환경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도록 윤활유 수입업체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징수 등 강경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업체는 윤활유 첨가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윤활유첨가제 판매업체 및 윤활유 생산업체들은 「한국윤활유공업협회」를 통해 환경처장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신고 연기요청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수입이 묶인 윤활유첨가제는 Exxon의 20여개 제품, Rubrizol의 10여개 제품, Chevron의 3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환경처가 90년8월 제정, 91년2월 공포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기존에 생산·수입된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화학물질목록」(8951개 품목)에 의거, 제외된 품목을 생산·수입할 시 「유해성 심사단」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며, 단 91년 2월8일 이전 수입·생산된 제품 또는 외국에서 유해성판정이 공정된 품목은 「신고면제 화학물질」로 인정, 이에 따른 신고면제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간 환경처와 업체간의 논란이 되어온 것은 신청서 양식으로 환경처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구조식 또는 시성식, CAS번호 및 성상, 함량 또는 성분조성 등의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첨가제 판매업체는 노하우 및 지적소유권의 비밀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CAS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관리법」이 공포된 후에 「면제 신청서」 제출과 관련, 첨가제 판매업체와 사용업체인 윤활유 생산업체간의 자료작성 및 제출의 주체 시비가 계속돼, 법에 의하면 윤활유 생산업체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첨가제 메이커의 자료유출 거부 및 윤활유 생산업체의 자체해결(대정부 로비 등)요구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

한편, 3월 환경처는 윤활유 생산중단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 오는 6월말까지 신고기한을 연기하고 첨가제 수입을 통관시키는 한편, 제출양식도 CAS나 IUPAC 표기방식보다 완화된 일반 화학명칭·ATC 표기방식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1년 국내 윤활유 총 생산량은 자동차용 2만4318톤, 선박용 6696톤, 공업용 1만4608톤 등 총 5만8290톤 규모이며, 첨가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신고대상 화학물질은 HS 제28류(무기약품류), 29류(유기약품류), 32류(염료·안료·착색제·페인트·잉크 등), 34류(비누·왁스·조제제 등), 38류(윤활유·첨가제 등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으로 「관리법」 자체의 환경·취급상 안전성 도모 등의 목적과는 달리, 향후 화학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